

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노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2. 3. 11. ~ 3. 17.(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 내용은 3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먼저, 안 제2조제5호에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 외에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리·통에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시의 노인복지 시책 안내를 위하여 애쓰시는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그동안 대가 없이 묵묵히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신 노인회장님들에게 작은 보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대상을 각 통·리에 노인회장으로 위촉하도록 강제 규정화시키지는 않았으나 지도원 업무가 노인회장의 고유 업무인 만큼 다른 노인 회원이 위촉되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50,200천원(50,000×556명×9월)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3항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로당 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 활동 경비 : 556명
(연도별 경로당 10개소 증가 감안)

나. 추계결과

- 인 원 : 556명(16개 읍면동 분회장, 540개 경로당 회장)
- 활 동 비 : 5만원/명/월
- 소요예산 : 250,200천원(50,000원*556명*9월)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250,200	339,600	345,600	351,600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명)	556	566	576	586

다. 재원조달방안: 매 회계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노인복지과 과장 정금성 / 노인정책팀장 원경희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현행 조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2008.05.08 조례 제0746호

(일부개정) 2015.05.14 조례 제1247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3.10 조례 제1340호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7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

축·증축·개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증축·개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개의 리 또는 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이 있는 주택단지의 관할구역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의 신축

- 가.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내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열악한 재정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경로당 부지를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 나. 시로부터 마을회관 추가 건립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추가 신축할 수 없다.
- 다.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
- 라.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관할구역인 경우 관할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로당의 증·개축

- 가. 증축대상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 중 이용 인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증축 가능한 건축물
- 나. 개축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경로당 가운데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되고, 부지 및 건축물이 시 소유인 경우에 시행한다.
- 다.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4조제1

항제3호에 따른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4. 경로당 보조금, 회비 및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③ 제9조 1항에 따른 지원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